

등록번호	사회복지과-32050
등록일자	2015.9.2.
결재일자	2015.9.3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장애인복지팀장	사회복지과장	복지환경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김동일	조성률	代김인배	유용렬	황치영	09/03 최창식
협 조	주무관	이수정			
	의회법제팀장	이창하			
	규제개혁추진팀장	홍정진			
	★기획예산과장	권순우			

서울의 중심 **중구**

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계획

서울의 중심
중구

복 지 환 경 국
사 회 복 지 과

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촉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계획

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(2003.12.31.)으로 장애인·노인·임산부등의 편의시설설치 촉진기금 관련 근거 조항이 삭제되고 기금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

I 폐지 근거
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
 - 제18조 편의시설촉진기금의 설치 (2003.12.31. 삭제)
 - 제19조 기금의 재원 (2003.12.31. 삭제)
 - 제20조 기금의 용도 (2003.12.31. 삭제)
 - 제21조 기금의 운영·관리 (2003.12.31. 삭제)
-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
 - 제8조 기금의 관리·운영 (2004. 6.29. 삭제)
 -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(2004. 6.29. 삭제)
 - 제10조 기금운영심의회 (2004. 6.29. 삭제)
 - 제11조 다른 법령의 준용 (2004. 6.29. 삭제)

II 조례 폐지 사유

- 상위법령의 근거가 삭제되어 기금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없음
-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현재 우리구에만 존재

III

서울특별시 각 자치구별 해당 조례 운영 현황

자치구	조례 운영 현황			비 고
	폐지	미제정	제정	
25	17	7	1	

IV

추진일정

- 조례폐지 방침 : 2015. 9월
- 입법예고(20일) : 2015. 9월
-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 : 2015. 9~10월
- 구의회 조례안 이송 : 2015. 10월
- 조례폐지 공포 : 2015. 10월

IV

참고사항

- 예산조치 : 비예산
- 부패영향평가 : 비해당
- 규제심사 : 해 당
- 성별영향평가 : 비해당

붙임: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노인임신부 등의 편의시설 추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
폐지 조례안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촉진
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·노인·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촉진 기금 설치
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